

# 사단법인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원」정관

제정 2012. 02. 09.

개정 2012. 10. 22.

개정 2013. 04. 10.

개정 2014. 10. 21.

개정 2015. 07. 09.

개정 2016. 06. 29.

개정 2017. 09. 28.

개정 2018. 06. 27.

개정 2018. 12. 19.

##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하“법인”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6번지에 두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2. 교육 프로그램 기획·제공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기업정보와 일자리 정보 제공
5. 직업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6.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한 고용 중개

7. 산학연 R&D 커뮤니티 형성
8. R&D 프로젝트 지원
9. 산학융합지구 회원 관리
10. 산학협력 사업 기획·관리
1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QWL밸리 사업 지원
12. 평생교육시설운영
13. 산업용 기계 및 시설·장비 임대
14. 연구용역
15. 일자리창출(취창업) 지원
16. 기업지원사업 운영

##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경제계 단체,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로 한다.
  3.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대학의 학생,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이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정회원으로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회원가입 절차,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 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상근임원인 원장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1.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2. 군산시 부시장
  3.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4. 군산대학교 총장
  5. 전북대학교 총장
  6. 호원대학교 총장
  7. 군장대학교 총장
  8.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9. 원장
  10.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회장
-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 이사”라 한다)는 경제계, 산업계,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과 이사장의 제청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사장 및 원장은 제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12조(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상실한 때 종료되며, 해당 직의 후임자가 그 이사직을 승계한다.

- ② 선임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선임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선임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제10조 ①항의 대학총장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단,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회는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원장)** ①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도 3년으로 한다.
- ③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사무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원장추천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추천하는 1인, 대학이 추천하는 2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 등 9인으로 구성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학이 원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법인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 ⑧ 기타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 (감사)** ①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원장은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장 및 원장은 제외)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가 상반될 때
- 3. 법인과 이사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이 진행 중 일 때

##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원장을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모든 이사 및 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이사가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사록)**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녹취한 바를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5. 수익사업체 전입금(기업연구관 임대수입 등)
- 6. 위탁사업 수입금
- 7.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7 장 사무조직 및 운영위원회

**제38조(조직)**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위원회)** ① 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8 장 수익사업

**제40조(수익사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사업
2. 산업용 기계 및 시설·장비 임대
3. 기업체 재직자 교육
4. 상기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41조(수익사업의 명칭)** 제4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사업소
2. 산학융합지구 QWL관 사업소

**제42조(수익사업체 주소)** 이 법인 수익사업의 주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6, 515-7번지로 한다.

**제43조(수익사업체 관리인)** ① 제40조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무국에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 9 장 보 칙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0분의9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부동산은 토지소유자에 귀속하고, 동산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2012.02.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부 칙(2012.10.22)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33조(회계연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추진기간(2011.05~2016.06) 동안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기간을 회계연도로 정한다.

**부 칙(2013.04.10)**

-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거쳐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1)**

-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거쳐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09)**

-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거쳐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29)**

-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거쳐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28)**

-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거쳐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27)**

-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거쳐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